[서식 예] 손해배상(기)청구의 소(공작물의 보존하자, 소유자를 상대로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손해배상(기)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0. 7. 25.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피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○-○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데, 2000. 1월경부터 건물 담벼락에 여러 군데 균열이 생기므로 건물 임차인인 소외 ◈◈◈가여러 차례 건물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그 수리를 미루어 오던 중, 2000. 7. 25. 16:40경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○서○○○○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건물 담벼락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마침 불어온 강풍에 담이 길쪽으로 붕괴되면서 차량 좌측면을 덮쳐 차량을 파손하는 손해를 야기하였는바, 당시 불어

온 바람은 통상적인 태풍의 작용으로 천재지변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고, 항 입인 소외 ◈ ◈ ◈ 의 통보에 의해 담벼락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, 사고위 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, 피고는 공작물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2. 손해의 범위

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심하게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금 5,000,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.

3.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0. 7. 25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

1. 갑 제2호증 견적서

1. 갑 제3호증 수리비영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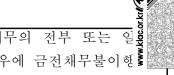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:www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 •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 · 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,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됨(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다23551 판결). •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·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·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(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7022 판결). 		



- ·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**월** 이행을 명하는 판결(심판을 포함)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

 ★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현재는 연 15%임)에 의하고(다만, 장 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, ②채무자가 그 이 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 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 위 법조항의 「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」는 「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때」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,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 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. 한편 「그 상당한 범위」는 「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」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 건의 사실심(제1심 또는 항소심)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「사실심 판결선고시 , 까지로 보아야 하므로,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,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 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(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6다17202 판결).
- ·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 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 율로」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,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 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 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,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 을 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 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」청구하기도 함.

지연손해금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 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.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www.klacorkry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